

조문별 개정 이유서

1.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같음(안 제31조의2)

가. 개정 이유

- 타 법령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제품의 경우 「화학물질 관리법」상 중복 표시·제공을 방지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표시된 제품은 해당 표시로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고지방법을 같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2.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(안 제37조 제5항, 별표 6의3, 별표 6의4)

가. 개정 이유

- 작업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단기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 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,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교육의 내용·방법 등 이행기준 구체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교육 실효성 및 화학사고 예방 역량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3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(안 별지 제42호 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(별지 제42호)에 접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 항목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화성 물질의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